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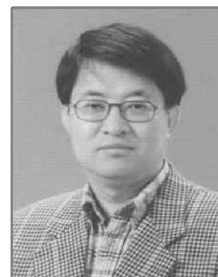
언어(言語)를 둘러싼 표준 이야기

1. <표준>의 어원

영어의 <표준>이란 단어는 standard인데, 이 단어는 다소 기구한 운명과 우여곡절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에서도 그대로 standard이며, 명사와 형용사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18세기 초에 영어에서 차용(借用)되었는데, 이 영어 standard는 고대 프랑스어(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사용되던 현대 프랑스어의 古語) estandard에서 유래한다. 지금 프랑스어에 남아 있는 이 고대 프랑스어 estandard의 후손은 ctandard인데 그 의미는 '군기(軍機)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대 프랑스어의 이 단어가 영어와 동일 계열인 게르만어(독일어)에서 유래한다는 점이다. 잘 알고 싶어서 프랑스인들의 기원은 원래 켈트족(켈트족)에 라틴족(로마인들)이 기원전 1세기부터 섞이기 시작했고, 여기에 다시 5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서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섞여 생겨난 민족이다. 그리하여 이 게르만족이 사용하던 단어가 고대 프랑스어로 넘어온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어의 조상은 라틴어인데 라틴어에서는 이 standard란 단어가 출현하지 않는다.

이 단어 standard는 원래(어원상으 로) 두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合成語)로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단어가 두 단어로 구성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를 분석해 보면, stand-ard로 분석된다.

stand라는 단어는 명사(또는 동사)로서 그 뜻은 잘 알고 싶어서 '서 있는 행위'이다. 뒷부분 -ard는 형용사로서 '굳은, 단단한'의 뜻을 갖는다. 영어로 번역하면, 'stand firm'이란 뜻이 된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부동자세(不動姿勢)라고나 할까. 이 합성어는 형용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어 '불굴의, 굽히지 않는, 꿋꿋한'의 의미로서 주로 전장(戰場)의 용사가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는 자세에 적용되었다. 오늘날 영어의 stand의 의미 중에 있는 '최후의 저항, 반항, 확고한 입장'은 이러한 의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011-9945-4270
hkkim@knou.ac.kr

미를 한편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군기(軍旗)'란 의미의 프랑스어 etandard는 중세기에 전쟁에서 모든 전사들이 싸우는 동안에 진장의 높은 곳에서 꽃꽂하게 박아서 전사들이 결전(決戰)을 치리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군기가 쓰러지면 싸움을 하던 모든 전사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패퇴(敗退)했던 것이다.

원래 이러한 의미를 지녔던 이 standard란 단어가 오늘날 사용되는 '표준, 규범'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된다. 이 단어는 18세기에 돈에 적용되어 '동전의 단위, 규격, 본위'란 의미를 지녔다.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 의미가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에는 '기준치, 수준'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비로소 오늘날의 의미인 '모델, 표준'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는 프랑스(1933년)보다 영국(1898년)이 항상 앞서서 사용되었다. 아마도 영국의 산업혁명 덕택에 산업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각종 산업기기 및 기술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영국에서 더 절실했던 모양이다.

2. 언어의 표준

그런데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이 <표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표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례화된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에 의한 규범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수많은 다양한 집단들과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의사소통의 매개인 언어를 규약의 체계, 즉 코드(code)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일정한 규범 위에서 제정된 언어를 수용하여 이를 거의 강제적으로 따르

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전(法典)도 코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은 이러한 사회적 규약에 바탕한 언어에 근거해서 언어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러한 언어의 국가사회적 규범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표준>이다.

언어의 표준은 <표준어>(standard language)를 대상으로 한 모든 언어생활, 즉 발음, 정서법(맞춤법), 문법, 사전, 각 분야의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언어관용을 통제한다. 표준 발음, 표준 맞춤법, 표준 문법, 표준 사전, 표준 용어, 표준어 등 모두 <표준>이란 딱지가 붙는데, 아직 우리의 언어 분야에서는 표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가장 잘 지켜지는 분야가 맞춤법이다. 아직까지 거의 미개척된 분야가 전문 용어의 표준화이다. 전문 용어는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언어생활을 통제하는 규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크거나 사회전반적인 유통 채널을 거치는 의사소통일수록 이 규범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방송에서 어나운서들은 표준어의 발음 훈련을 받는다. 초등 및 상급 학교의 언어교사들은 한국어의 표준 교육을 받고, 공무원들은 표준 맞춤법에 의한 글을 쓴다. 다시 말해서 표준어가 공용어(official language)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단일 언어권이기 때문에 공용어는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다국어 사용권에서는 공용어를 반드시 지정하여 이를 모든 공적 문서와 각종 공식상황에서 사용한다. 예컨대 스위스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모두 사용한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같은 프랑스어권에서는 자국어 외에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모든 사회적, 공적 언어생활은 정해진 표준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언어정책을 통해서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관습에 의해 어느 정도 관례화된 후에야 규범화되고, 강제성을 지닌 규약이나 법규가 된다. 그것은 언어가 제도(制度)이며, 관습이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강제적 규범은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급기야는 그 강제규범이 현실과 너무 괴리되기 때문에 사문화(死文化)되기 쉽다.

언어표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 관례화된 사회적 규범으로 흔히 관용(usage)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규범은 한 사회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규범에도 처방적(prescriptive) 규범과 사실적(descriptive) 또는 관용적 규범이 있다. 그리고 상위 규범도 있고, 하위 규범도 있다.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 국지적 규범도 있다. 문화 의존성이 클수록 국지적이고, 문화 의존성이 적을수록 국제적이다.

3. 상위 표준의 정착

언어정책에 의한 언어표준이 가장 확고히 정착된 나라가 프랑스이다. 그야말로 <표준>의 어원적 의미를 가장 잘 고수한 나라이다. 처방적 규범과 사실적 규범,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국제적 규범과 국가적 규범을 잘 조화시키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표준 규범을 잘 유지하고, 고수하고, 사용하고 있다. 확고하게 규정된 문법, 사전, 정서법의 정착으로 표준 프랑스어는 역사에 남는 문학작품들과 과학적 저술들, 예술을 남기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우수성은 바탕으로 18세기부터 유럽의 국제어, 외교어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어로의 정착 과정을 통해서 언어표준이 아직 미흡한 우리의 언어생활에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프랑스 언어정책의 근간은 프랑스어 국민의 언어

의식 및 태도와 사회적 합의이다. 라틴 문화권에서 민중어의 열등한 지위에 있던 한 방언권의 지역어가 유럽 문화의 지주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준기가 있다. 첫째는 표준어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가 획득한 위세이고, 둘째는 프랑스어에 대한 이데올로기, 즉 <올바른 용법>의 정립이며, 셋째는 프랑스어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을 통한 규범화이다.

표준어의 성립

5, 6세기에 오늘날 프랑스 북부지방에 프랑크족이 들어와 파리(Paris)가 중심인 일로 드 프랑스 지방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초기에 이들이 사용하던 프랑키아어는 하나의 방언에 지나지 않았다. 위그 카페 왕조(987-1328년)가 이곳에 왕국을 세우면서 프랑키아어는 점차 널리 사용되었다. 13세기를 지나면서 프랑키아어로 쓰인 문헌들이 많이 출현하고, 타지역의 작가들도 이 방언으로 글을 썼다. 이 시기부터 이 방언은 프랑스의 표준어가 될 여건을 갖추었고, 그 이후 표준어의 길을 걷게 되어, 오늘날 파리지방의 방언이었던 프랑스어가 프랑스 국가의 표준어가 된 것이다.

프랑스의 최초의 공식적 언어법령은 빌레르 코트레 칙령(1539년)이다. 이 칙령은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당시 라틴어로 기록하던 법적, 행정적인 공문서를 오직 프랑스어로 기록할 것을 규정했다. 문서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는 지배계층, 행정가, 법률가, 상인들은 그 이후 모두 라틴어 대신 프랑스어를 사용하였고, 대중들은 글을 모르므로 지역어와 방언만을 사용했다.

<올바른 용법>과 규범의 성립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인쇄술의 발달로 16세기에 많은 문법서들이 작성되었고, 문법가들은 프랑스어의 <올바른 용법>과 <틀린 용법>이 있음을 구별하였다. 즉 이 <올바른 용법>이 곧 언어생활의 표준이 된 것이다. 또한 프랑스어는 궁정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문법가들에 의해 규범화되었다. 예컨대 문법가인 보졸라(1585-1650년)는 당시 작가들이 글쓰는 방식과 일치하고, 궁정의 교양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올바른 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어의 표준이 된 <올바른 용법>은 유명 작가들의 언어모범에 준거해서 규범화된 것이었고, 궁정의 귀족들이 사용하던 언어관례였다. 또 1635년에는 왕의 행정고문인 리슐리외에 의해 언어정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설립되어, 언어의 가장 올바른 형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였다. 이 <아카데미>는 문법과 사전을 만들고, 행정, 과학, 문학 등 문화적인 제반 목적에 부응하는 프랑스어 규범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는 언어순수주의와 <올바른 용법>이 정립되어 언어규범이 권력지층과 문법가, 작가, 언어정책기관의 영향력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준수되도록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오늘날 <아카데미>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으나 영향력은 여전히 지대하다. 프랑스어의 현양을 위해 수많은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각종 문학협회, 문학지, 공식, 미공식의 언어단체를 지원, 협력한다. 예컨대 1983년 1월 시청각과 광고용어 목록 작성과에 관련된 법은 277번 법률 부록1의 표현과 용어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의견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혁명 시기와 19세기

대혁명(1789년)은 프랑스어의 전국적 확산과 대중

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대혁명의 이념에 언어정책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통일은 대혁명의 일부이다'라는 이념 아래 프랑스어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인 세부사항들을 제시했다. 그 중 교육 제도를 통한 간접적인 언어입법이 가장 중요한 언어정책이다. 이 정책은 프랑스어의 통일을 위해 프랑스어를 모든 국민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혁명정부는 1794년 12월에 다음의 법령을 공포했다.

제1조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공화국 영토의 모든 곳에서 모든 공문서는 프랑스어만을 사용한다.

제3조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직무수행 중에 조서, 판결문, 계약서와 다른 일반문서를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그런 문건을 서명, 승인하는 모든 공무원은 거주지의 경범 재판소로 회부되어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하고 즉시 파면한다.

이처럼 언어정책은 국가가 법의 권력과 학교제도를 통해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을 강제했고, 국가교육을 통해 언어입법이 강력히 실시되었던 것이다.

현대의 언어정책

대혁명기 이후 프랑스 왕당이 몰락하고, 올바른 프랑스어의 준거가 사라지자 유명 작가들의 언어관용이 입법가들에 의해 <권위>로 인용되어, 올바른 프랑스어의 전범(典範), 즉 규범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까지 이러한 규범이 지속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문용어의 증가, 외국과의 교류로 인한 외국어, 특히

영어 이입과 언어적 다원주의(多元主義) 그리고 언어 관용 상에서 드러난 언어변동, 사회계층의 변동 등으로 규범의 준거와 규범화가 문제시되자 과거 언어규범이 유효하지 않게 되자 새로운 언어규범이 절실했다. 그리하여 상류계층에 국한된, 문화적 엘리트가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처방적 규범(사용을 강제하고 따르게 한다는 의미)이 될 수 없었고, 대부분의 화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관용적(사실적) 규범에 기초를 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새로운 언어정책과 법제가 탄생되었다.

현대의 언어정책은 일상생활과 전문영역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해서 프랑스어를 방어하는 한편, 프랑스어권과 언어문화 결속을 다지면서 위축되어 가는 프랑스어의 국제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둔다. 특히 직접적인 언어입법이 핵심이다. 공식적으로 현대의 프랑스 언어법규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1975년 12월 31일의 마로리올법(입법제안자 마와 로리올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과 1994년 8월 4일에 제정된 투봉법이다.(프랑스어권 장관인 투봉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인다.)

1975년의 언어법규는 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즉 상업분야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과학과 기술영역에서 용어를 규정하고, 교육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마로리올법 75-1349는 상업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통제하는 기본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닌다.

제1조 : 상품명, 소개, 광고, 사용안내, 상품과 용역의 보증조건, 신용장, 청구서, 영수증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다. 외국어, 외국용어의 사용은 금지한다.

제4조 : 프랑스 영토 내에서 유효한 고용계약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 용어나 표현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법조항들은 위원회에서 논란을 거쳐 대폭 수정된 것이지만, 1973년에 입안되어 1975년 12월 31일에 통과할 때까지 거의 3년이 걸렸다. 이 법을 재정비하여 강화하자는 데에 대해 1982년에 많은 논란이 있어, 1984년에 법안으로 상안되었으나 인본의 반대로 성과가 없었다.

이 마로리올법의 시행은 소비자보호 정부장관 산하의 소미 및 규제방지 총괄국과 재경예산부 산하의 소비 및 공정거래 총괄국, 관세청이 책임지고 있다. 그것은 이 언어법의 위반사례를 이곳에서 감시, 적발, 고발하기 때문이다. 소미 및 공정거래 총괄국의 직부는 성공적이었다. 이 부서는 1983년에 174건의 관련 법 위반을 고발하고, 373,711프랑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법의 이행태반을 보완하기 위해 소미자 총연맹의 모델에 따라 프랑스어 사용자 총협회가 창설되었다. 이 시민단체는 공동의 언어 문화유산을 방어하고, 그 선양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언어법의 위반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그 사례를 보면, 1981년에 유럽사진사들 그 제품의 사용지침과, 보증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300프랑의 벌금을 물게 했다. 또 1983년에 국립 파리오페라단/엠지엠 콘체르트가 주관한 Bubbling Brown Sugar Show에서 사용된 영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60프랑의 벌금을 물렸고,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서 1,300프랑의 손해배상을 하게 했다.

1975년의 법규 외에도 1966년 프랑스어 최고심의위원회가 창설된 후 전문용어에 대한 건정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정부의 각 부처에는 반드시 전문용어위원회를 두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이 규

정들은 법적 효력을 지니며, 신어관보(新語官報)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결정된 전문용어들은 모든 공문과 국가와 계약을 맺는 모든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1984년 1월 24일의 시창각 매체, 광고의 전문용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부록에서 영어용어에 대한 프랑스어 용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록 1

maquette, n. f.

사용영역 : 광고

정의 : (생략)

영어: advanced lay-out

부록 2

금지 용어 색인

영어(금지용어) 프랑스어(추천용어)

advanced lay-out maquette

1994년의 투봉법은 여론조사와 반대의원들의 헌법 소원을 겪는 등의 난산 끝에 제정되었고, 1995년 3월 3일에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투봉법에서는 프랑스어가 교육, 노동, 교역, 공공업무의 언어이며, 프랑스어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특권적 연결요소라는 것을 제1조에 확인하고 있다. 그 골자는 소미자 관련 정보, 노동, 교육, 방송, 행사, 학회, 공공업무의 각 영역에서 프랑스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소미자 관련 정보(제2, 3, 4조)에서는 소미자가 제화, 상품 또는 용어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 보증기간과 조건의 기술, 방송광고에서 프랑스어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노동 관

련법에서는 노동계약과 구인광고, 내규, 단체협약, 노동자의 의무, 노동수행을 위해 알아야 하는 규정 등을 역시 프랑스어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언어상의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있다.(제5, 8, 9, 10조)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공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험, 선발대회,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프랑스어라고 규정한다.(제11조) 또 통신과 방송의 영역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또 프랑스인(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학회, 회의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자료, 업무 자료, 회의록, 보고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프랑스어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다.(제6조)

마지막으로 공공업무의 영역에서 공법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출판물, 잡지, 발표문을 프랑스어로 작성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역시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그 외의 규정에서는 위반 시에 적용되는 시행세칙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공공단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가 이 법을 어기면 지원금 전체나 일부를 회수하거나(제15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공무원이 이 규정위반을 적발할 권한이 있으며, 서류 열람, 복사, 제품의 선취(先取)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16조) 그리고 법령으로 그 조건을 인가받은 정규협회는 위반 관련 소송에서 손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예컨대 프랑스어 수호협회나 프랑스어 정보처리전문가 협회 등의 시민단체가 그들이다.

이러한 언어입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994년 4월 12일자로 발표된 국무총리 회장(비호)은

법시행의 핵심적 주체인 공무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 법령, 명령의 엄격한 시행을 확보하고, 법시행을 책임진 공무원은 법위반을 단호히 적발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용어위원회를 지원하고, 승인된 용어를 보급하는 일이나 정부의 홍보부서나 출판물은 프랑스어 사용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교육을 통해 이 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외국기관이나 국제관계에서도 이 프랑스어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발표되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정부 각 부처의 지침을 작성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법시행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

이처럼 언어규범이 존재하려면 이 규범의 제도화를 위한 인력, 조직, 지도적 집단이 필요하고, 이를 언어사회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제반 수단과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제반 조처들이 바로 언어정책의 기반이 된다. 프랑스어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집단적인 노력이 결집되어 산출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는 자신들의 언어를 자아(自我)와 집단의식(集團意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다. 바로 이들이 프랑스어 규범을 확립하고, 규범적 조처를 취하고, 규범을 형성, 발전시킨다.

|기술표준 2008, 4

